

제 1장.총칙

1. 목적

- 1)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함
- 2)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 3)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호 등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
- 4)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

2. 정의

- 1) 장애인: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중증장애인 :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
- 2)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
 1. 장애인 중에서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로서
 - 신체적 장애 : 주요 외부 신체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로 변경
- 3)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이 법의 적용을 제한
- 4) 장애인 학대 :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 5)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 장애인학대로서 법률에 해당하는 죄

3. 책임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1.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
 2.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
 3.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
- 2) 모든 국민
 1. 장애 발생의 예방
 2.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력
 3.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
 4.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

4.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1) 실시자 : 보건복지부장관
- 2) 목적 :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 시행
- 3) 종합계획

1. 장애인의 복지와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교육문화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실시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2.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변경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
3.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 절차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5) 국회에 대한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전년도 사업계획의 추진실적, 추진성과의 평가를 확정할 때,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6. 장애인의 날

- 1)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 장애인의 날로부터 1주간이 장애인 주간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노력

제 2장 : 기본정책의 강구

1. 교육

- 1) 각 급 학교의 장: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 등의 불리한 조치는 불가
- 2) 모든 교육기관 :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2. 사회적 인식개선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은 소속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3.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 1) 목적 : 장애인 관련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 복지진흥 등을 위함

4. 경제적 부담 경감 (ppt 7)

장애평가법 시행령 [별표 2]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7조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무궁화호·몽근열차 나. 새마을호·KTX	100분의 50 100분의 50(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분의 30(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철도(「철도사업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기철도를 포함한다)	100분의 100
3. 공영버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만 해당한다)	100분의 100
4. 국공립 공연장	100분의 50
5. 공공체육시설(국가등이 설치·관리·운영하는 시설 중 생활체육관·수영장·테니스장·스키장만 해당한다)	100분의 50
6. 고궁	100분의 100
7. 농원	100분의 100
8. 국공립의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9.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도시철도 = 전철
공영버스 = 원주의 누리버스/정선군의 와외버스/전남 신안군 1004버스

- ※ 비고
1. 철도 등 운송수단은 여객운임만 감면된다.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7

제 3장 : 복지 조치

1. 장애실태조사

- 1) 실시자: 보건복지부장관
- 2) 실시시기: 2005년을 기준연도로 3년마다 1회
- 3) 조사방법: 전수조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실시) 또는 표본조사(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

2. 장애인 등록

- 1) 신청자: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 (법정대리인 등)
- 2) 등록내용
- 3) 등록발급: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해야 함)
- 4) 등록증
 1. 등록증: 양도하거나 대여금지,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 불가
 2.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 (1) 신청서를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
 - (2)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3)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함
 - (4)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 (5) 진단서를 장애인단을 의뢰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6) 시군구청장이 진단 결과나 장애정도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장애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 (7) 장애인으로 등록하여야 함

(8)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함

- **장애인 등록증 재발급**: 장애인은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 면, 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5) 장애 정도의 조정

1.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 정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장애 정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2. 시군구청장은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음.

6)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 7) 등록증 취소 : 시군구청장이 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해야 함
 1. 사망한 경우
 2. 장애인이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한 경우

3.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1.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2.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3.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4. 주간활동서비스
 5.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은 종합조사하려면 조사의 일시, 장소, 목적, 내용 및 담당자의 인적 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함
- 3) 시군구청장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서를 작성하는 업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대한 연구, 개발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함
- 4) 국민연금공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음

5. 장애인복지상담원

- 1) 임용권자 : 시군구청장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여 시, 군, 구에 둠
- 2) 자격
 1.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소지자
 2. 특수학교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3. 장애인복지 관련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기준에 상응한 자
 4.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 3) 의무 :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운용상 부득이한 경우, 소속 공무원 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상담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6. 자녀교육비 지급

- 1) 교육비 지급권자 : 장애인복지실시기관
- 2) 교육비 지급대상 및 기준: 소득과 재산 고려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1.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자녀를 둔 장애인
 2.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
- 3) 자녀교육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학비지급신청서에 소득,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와 재학증명서나 입학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7.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 :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 강구
- 2)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1. 발급권자 : **시군구청장**
 2. 발급대상
 -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다음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 등록된 장애인
 2. 장애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 중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
 - (1)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 자매
 -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
 - (3)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
 3. 국내거주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제2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
 4.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6.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7.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8.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3) 시군구청장 : 장애인사용 자동차 등 표지 발급현황을 기록, 관리
- 4)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 시군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동차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결과 보건복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함) 이 자동차를 이용할 때에 그 장애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관계 법령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원인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해야 함.

표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분류

대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 기능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 신체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보행, 일상생활동작 등)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 신체 기능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는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의 이상, 심장을 이식받는 경우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 호흡기기능 이상, 폐 이식을 받은 경우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 간기능 이상이나 간 이식을 받은 경우
		장루, 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요루
		뇌전증장애	알성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 뇌전증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조현병, 정동장애, 우울장애	
	자폐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 등	